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ZI
----------	----

발의년월일 : 1995. 8.

발의자 : 운영위원장

□ 개정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제명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함
-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하고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을 지급토록 함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 여비를 지급토록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5조, 「별표 4」, 「별표 5」
-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예산조치 : '95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기타 참고자료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 (회의수당지급) 의원이 회기중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회의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제8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9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0조 (준용) 이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선 박 운	박 항 운	항 공 운	차 동 운	차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 부 의장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비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 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 외 어 비 지 급 기 준 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分	철 도 운 이	신 비 운 이	항공운 이	차 동 차 운 이	일 비 (1일당)	속 바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 부 의 장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등급 의 철도임 의 산임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등급 의 철도임 의 산임	1등 정 액	실 비 액	기동급30	기동급147	기동급133	150	180	210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 는 고승차에 요하는 실비 액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 는 고승차에 요하는 실비 액			나동급30	나동급117	나동급99			
의 원	• 공무상의 사 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 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 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 액	실 비 액	다동급30	다동급 92	다동급72	140	170	195
					리동급30	리동급 79	리동급61			
					기동급25	기동급130	기동급107			
					나동급25	나동급 90	나동급78			
					다동급25	다동급 72	다동급58			
					라동급25	라동급 62	리동급49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ток홀름, 둉경, 홍콩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르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
웨이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케마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싱가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
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 주 : 덴마아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희랍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라. 라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베어마, 스리랑카, 휴지, 네팔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テ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
아, 배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

투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 주: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주: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투아르데,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참고법령)

□ 지방자치법

제 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①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

제 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 ① 법 제 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시행령제15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별표 5」를 다음과 신설한다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행령제15조 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1991. 4. 12)
조례 제1910호

개정 1992. 1. 31 조례 제1976호
1992. 9. 25 조례 제1999호
1994. 1. 7 조례 제2107호
1994. 10. 14 조례 제215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 (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2. 1. 31)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료료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개정 '94. 10. 14)

제7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개정 '94. 1. 7)

③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94. 1. 7)

제9조(준용) 이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1952. 6. 3 조례 제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2. 1. 3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9. 25.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7.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 10. 14.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92. 9. 25. 94. 1. 7, 94. 10. 14)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선 박	항 공	자 동 차	현 지 교 통 비 (1일 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 당)
	운 임	운 임	운 임	운 임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 ·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위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비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브통 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 외 어 비 지 급 기 준 표(제7조 제2항 관련)(개정 94. 10. 14)

(단위: 미불화)

구 分	철 도 운 이	신 바 운 이	항공운 이	지 동 차 운 이	일 비 (1일당)	속 바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 의 장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등급 의 철도임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등급 의 신비	1등·정액	실비액	기동급 30	기동급 147	기동급 133	150	180	210
	•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그승차에 요하는 실비 액	•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그승차에 요하는 실비 액			나동급 30	나동급 117	나동급 99			
의 원	• 공무상의 사 유로 인하여 규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 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기동급 25	기동급 130	기동급 107	140	170	195
					나동급 25	나동급 90	나동급 78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기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ток홀름, 동경, 홍콩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
트바고, 자메이카

(3) 유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
웨이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케마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싱가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
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 주 : 덴마아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희랍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라. 라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베어마, 스리랑카, 휴지, 네팔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쿨롬비
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로, 페루, 볼리비아, 우

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 럼 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뇌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